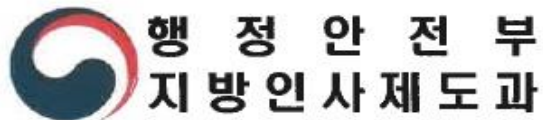


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

2019. 11.



□ 지방공무원법

제25조(임용의 기준)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, 근무성적, 경력평정, 그 밖의 능력의 실증(實證)에 따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, 이공계 전공자,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·승진·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□ 지방공무원임용령

제3조의4(균형인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정책(이하 "균형인사정책"이라 한다)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(이하 "균형인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균형인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균형인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 2. 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
 3. 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인사계획의 수립절차·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『2021 구미시 조직개편』에 따른 기구 조정(假案) [본청]

[illegible]

[출장소 등]

[illegible]

※ 기획·허가국(4과) : ○기획예산담당관, ○홍보담당과, ○종합허가과, ○인원봉사과 ⇒ 국:신설